남원시체육회 수탁 운영
공공체육시설 운영규정

2023. 10. 17. 이사회 승인 제정
2024. 7. 24. 이사회 승인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체육회 수탁 운영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구, 조직, 복무,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4.>

제2조(적용)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7. 24.>

제 2 장 인 사

제3조(인사)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24.>

1. 해당직에 대한 채용후보자가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일 경우
2. 직무의 성질상 공개채용이 부적당할 경우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3 장 직 제

제4조(조직) 공공체육시설에는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1. 정규직 : 팀장
2. 일반(계약직) : 행정, 시설관리, 시설환경, 수영강사, 안전요원
3. 일용직(아르바이트) : 시설환경, 수영강사, 안전요원<개정 2024. 7. 24.>

제5조(팀장 등의 의무) ① 팀장은 남원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장의 명을 받아 공공체육시설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정원 및 승급) ① 공공체육시설 직원의 정원은 체육회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② 공공체육시설 직원의 정원은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와 같다.<개정 2024. 7. 24.>

제7조(업무분장)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장한다.

부 서 별	분 장 업 무
팀 장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행 정	1. 직원 급여 관리,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2. 물품 및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SNS 관리에 관한 사항 5. 매출 관리(일, 월 매출)에 관한 사항 6. 지출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조금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8.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영장 이용객 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0. 회원카드, 일일 입장권에 관한 사항 11. 각종 현황자료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2. 안내 데스크 업무에 관한 사항 13. CCTV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1.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수기 처리기,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2. 냉난방기, 태양광 시설에 관한 사항 3. 보일러 관리, 소방설비에 관한 사항 4. 도시가스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기 정화시설 관리,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6. 엘리베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7. 안내 데스크 업무 보조 및 남자 탈의실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 대관업무, 시설 체크리스트 관리에 관한 사항 9. CCTV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환경	1.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환경에 관한 사항 2. 수영장 로비, 계단 입구 환경에 관한 사항 3. 수영장 외(배드민턴장, 족구장, 축구장) 환경에 관한 사항
수영강사	1. 수영장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영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4. 풀장 환경 관리 및 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24.>
안전요원	1. 수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풀장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 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제 4 장　　복　　무

제8조(직원의 임무) ① 직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습득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금지사항) ① 직원은 회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회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그 업무와 관계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준한다.

제11조(근태)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참으로 하며, 정해진 출근시간 3시간 후에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팀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원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는 무단결근 1일로, 월 3회를 초과하는 2회마다 무단결근 1일로 본다. 이 경우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신설 2024. 7. 24.＞

제12조(휴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무일로 정한다.

1. 법정공휴일
2. 근로자의 날(5월1일)
3.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신설 2024. 7. 24.＞

제1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가족 돌봄 휴가로 구분한다.＜신설 2024. 7. 24.＞

제14조(연가) 공공체육시설 직원의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신설 2024. 7. 24.＞

제15조(병가)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4. 7. 24.＞

제16조(공가) 공공체육시설 직원의 공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신설 2024. 7. 24.＞

제17조(육아휴직) 공공체육시설 직원의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신설 2024. 7. 24.＞

제18조(특별휴가) 공공체육시설 직원의 특별휴가는 “별표 제2호”에 따른다.
＜신설 2024. 7. 24.＞

제19조(가족돌봄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사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신청한 사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사원이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7. 24.>

제 5 장 보 수

제20조(급여구분) 직원의 보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규정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급여는 “별표 제3호”와 같다.
2. 각종수당은 “별표 제4호”와 같다.
3. 복리후생비는 “별표 제5호”와 같다.<개정 2024. 7. 24.>

제21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급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정기휴무는 출근일수에 삽입한다. 다만, 일용직은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제22조(급여지급) 급여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준용규정)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 6 장 직원의 징계

제24조(직원의 징계) 공공체육시설 직원의 징계는 “남원시체육회 사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7. 24.>

제 7 장 퇴 직 금

제25조(퇴직금) 공공체육시설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일반 적립”에 따른다.
<개정 2024. 7. 24.>

제 8 장 여 비

제26조(여비) 공공체육시설 직원의 공무로 인한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4. 7. 24.>

제 9 장 재해보상

제27조(재해보상)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24.>

제 10 장 사무처리

제28조(사무처리) 공공체육시설의 사무처리는 “공공체육시설 팀장”의 결재에 따른다. <개정 2024. 7. 24.>

제 11 장 회 계

제29조(회계) 공공체육시설의 회계는 “공공체육시설 팀장”의 결재에 따른다. <개정 2024. 7. 24.>

제 12 장 물품관리

제30조(물품관리) 공공체육시설의 물품관리는 “공공체육시설 팀장”의 결재에 따른다. <개정 2024. 7. 24.>

제 13 장 공공체육시설 이용

제31조(공공체육시설 이용)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제5호”의 약관에 따른다.<개정 2024. 7. 24.>

부 칙(제정 2023.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칙)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및 “남원시체육회 사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호】

직원 정원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4개소)

직 책	정 원	직 급	비 고
팀 장	1	홍보사업팀장	
행 정	4	계약직	
시설관리	2	계약직	
시설환경	4	계약직	
수영강사	3	계약직	
안전요원	2	계약직	
계	16		

【별표 2호】

직원 정원표(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직 책	정 원	직 급	비 고
팀 장	1	홍보사업팀장	
행 정	2	계약직	
시설관리	1	계약직	
시설환경	1	계약직	
수영강사	2	계약직	
계	7		

【별표 3호】

직원 경조사별 휴가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형, 형수, 동생, 제수)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표 4호】

직원 각종 수당 지급 기준

가. 기본급＜개정 2024. 7. 24.＞

직 책	지 급 액(일급)
팀 장	“남원시체육회 사무규정”에 따른다.
행 정	시급×8시간
시설관리	시급×8시간
시설환경	시급×8시간
수영강사	시급×8시간
안전요원	시급×8시간

나. 휴일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에 한하여 연말에 지급한다.

다. 연장근로수당

- 팀장, 행정, 시설환경, 수영강사, 시설관리, 안전요원 : 52시간 이내 ＜개정 2024. 7. 24.＞
- 단, 관리 운영상 기준 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 수영장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적용하며, 개인별 발생시간을 합하여 지급한다.
-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4. 7. 24.＞

라. 특수업무수당 : 지급기준 ⇨ 직무에 관련된 자격을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수영강사, 시설관리 등 월 40,000원)

- 단, 중복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마. 자격수당 : 직무에 관련된 자격을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팀장, 수영강사, 시설관리, 안전요원, 행정 등 건당 30,000원)

【별표 5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가. 급량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행정, 시설관리, 시설환경, 수영강사, 안전요원	월 150,000원	매월 급여 지급 시

나. 일용직(아르바이트) 수당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안전요원	14,000원	매월 급여 지급 시

【별표 6호】

남원시체육회 수탁 운영 공공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남원시체육회 수탁 운영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 및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24.＞

제2조(명칭) 본 규정은 「남원시체육회 수탁 운영 공공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이라 한다.＜개정 2024. 7. 24.＞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4조(회원 구분 및 요금) 회원은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요금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원 가입) ① 회원 가입 시 동의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 가입이 불가하다.

②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하기 전 전문의, 담당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평소 지병 및 질환이 있는 환자)
2.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③ 수업이 적응이 어려운 자(배변 장애, 개인 거동이 어려운 자)는 안전의 확보를 위해 담당 직원의 판단하에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

제6조(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회원 등록 절차) ① 소정양식에 따라 입회절차를 마친 후 회비(사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②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일 및 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운영상 등록(접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회원카드 발급 및 관리) ① 입회절차를 마치고 사용료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당일 회원증을 확인 발급한다.
②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회원카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⑤ 타인 명의의 회원카드를 사용한 때나 기간이 경과된 회원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 없이 회원카드를 회수하고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8조(회원 및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관계자(강사 또는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② 회원은 가입 후 가입 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공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지도 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 장애 등)이 있는 분들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체육시설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책임지지 않는다.
⑤ 공공체육시설 시설물에 대하여 성실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공공체육시설 강사가 아닌 제3자의 지도로 인한 사고, 훼손, 파손의 경우에는 회원 및 이용자 또는 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⑥ 회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 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및 이용자의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회원 및 이용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 및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공공체육시설에 물을 수 없다. 본인 부주의에 대한 예시는 각 호와 같다.

1. 회원 간 충돌사고(평영 발차기 시 상대방을 발로 차는 행위, 접영 시 상대방과의 충돌, 운동 중 충돌, 자유형 팔꺽기 시 맞은편 상대방과의 충돌, 운동 중 회원 및 이용자 간 충돌 사고 등)
2. 배영 시 풀 사이드 머리 부딪힘 사고

3. 비 강습 중 다이빙 사고(무분별한(강습시간 외 통제없이) 다이빙 시 안전사고
4. 플립 턴 시 발뒤꿈치 부딪힘 사고
5. 위 사항 외 기타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등

⑧ 강사, 직원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회원 및 이용자들 간 각출 행위도 일절 금지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공공체육시설의 시설과 개설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 사용 및 참가 자격을 갖는다.

② 회원은 공공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우선 부여받는다.

③ 회원은 강습 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을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득권을 갖는다.

제10조(회원권 양도 및 연기) ① 회원권은 양도·양수할 수 없다.

② 회원권의 연기는 회원의 신체상 문제 및 개인 사정(질병, 장기 출장, 이사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기 일자는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 접수한 일자로 하며, 잔여기간만 해당한다.

④ 연기 기간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1회로 한정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 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②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한다.

③ 타인의 회원권 이용·도용, 무단 이용, 할인 비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 중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게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정한 벌금(임의 사용료)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 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 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체육시설은 임의로 등록 거부 및 강제 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 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공공체육시설 회원 약관(회원 및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 강사,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3.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 거래(금전 거출) 행위를 한 경우

4. 회원 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6.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공체육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위험 요인을 끼치는 경우(음주, 위험한 물품 휴대 등)

8. 기타 공공체육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환불) 환불규정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제13조(개방 제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 · 경기를 개최할 경우
2. 시설의 개 · 보수를 실시할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할 경우

제14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강습을 한다고 인정될 경우
5. 공공체육시설의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음주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공체육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공공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6.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강습을 하는 경우
7. 공공체육시설의 약관(회원 및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 강사,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8.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 거래(금전 거출) 행위를 한 경우
9. 기타 공공체육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16조(수영 강습의 신청) ① 강습은 매달 마지막 전주에 기존 회원 및 신규 회원이 신청한다.＜개정 2024. 7. 24.＞
② 현재 강습을 수강 중인 회원(기존 회원)은 우선적으로 신청(재등록)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은 1인당 한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다. 2건 이상 신청 시 신청된 모든 강의가 일괄 취소된다.
④ 접수 인원이 정원의 50% 미만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다.
⑤ 수강신청방법은 운영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영장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⑥ 일일 수영장 이용자 및 회원 기간이 만료된 회원은 강습을 받을 수 없다.

제17조(수영 강습의 변경) ① 강습 변경 및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휴무할 경우 사전 공고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수강 신청 후 강습의 변경 혹은 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강사와 협의하여 강습 및 반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수영장 개인 사물함의 이용) ① 개인 사물함 등 대여시설은 수영장에서 정한 요금(3,000원)을 납부 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개인 사물함의 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용 자격은 수영장 이용 회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2. 개인 사물함은 수영장에서 정한 임대(사용)료 선납 등 수영장 사물함 운영 방침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3. 임대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동일 기간 연장 등록 시 임대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4.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 부착, 전화, 문자 메시지 등)하고 3일 경과 시 공공체육시설 2인 이상이 입회 후 개방하여 내용물을 보관한 후 타 회원에게 재임대가 가능하다.
5.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6. 개인 사물함에는 수영장 용품 및 필요 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7. 개인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8. 이용자는 공지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9조(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① 안내 데스크에 보관·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 및 이용자는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안내 데스크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고지된 귀중품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② 공공체육시설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습득한 유실물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지갑, 휴대폰 등 신원정보가 있는 물품 등 주요물품은 1개월 뒤 경찰서에 제출한다.

2. 각종 보석류, 현금 외 고가의 물품 등 귀중품은 1개월 뒤 경찰서에 제출한다.

3. 수영복, 수모, 수경, 운동화, 운동복, 샤워 바구니 등 운동용품은 1개월 보관 후 폐기한다.

4. 낱개 샤워용품(샴푸, 린스, 바디용품, 칫솔, 치약, 화장품 등), 양말, 속옷, 수건(스포츠 타월 포함) 등 소모품은 3일 보관 후 폐기한다.

5. 우산, 신발, 옷류, 가방, 학용품, 안경 등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용품은 2주 보관 후 폐기한다.

제20조(약관의 개정) 본 약관은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21조(효력발생) 본 약관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